

의무보험가입 변경안내

지금까지 저희 협회 업무에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소유하신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저희 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도 저희 협회에 가입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에서 아래와 같은 일부 소형건물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89. 10. 1부터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물은 저희 협회에 가입하신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 이후 부터는 귀하께서 원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방재전문기관인 저희 협회가 종전과 같이 계속 실시하오니 지속적인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반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 -

- 가. 4층건물
- 나. 교육법에서 정한 학교건물
- 다. 공동주택
- 라. 4층 이하의 사설강습소
- 마. 4층 이하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흥음식점
- 바. 4층 이하의 영화, TV 촬영소 및 방송시설
- 사. 4층 이하의 연면적 2,000㎡ 미만의 공장

손해보험회사 명단

- | | | |
|----------------|---------------|--------------|
| • 동양화재해상보험(주) |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 • 한국자동차보험(주) |
| •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 • 해동화재해상보험(주) | • A.H.A한국지사 |
| • 대한화재해상보험(주) | • 안국화재해상보험(주) | • CIGNA 한국지사 |
| • 국제화재해상보험(주) |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
| • 고려화재해상보험(주) | • 럭키화재해상보험(주) | |